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378호

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 
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25. 8. 29.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378호

「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64호, 2024. 10. 17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 때 「식품안전기본법」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.

## 2. 의견 제출

「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, 전화 043-719-2457, 팩스 043-719-2450, e-mail: sasaas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-378호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「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64호, 2024. 10. 1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2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(안)

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통보하고”를 “통보(교육기관의 장이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자문서로 하는”을 “전자문서 또는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”으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(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

### (신고관청 제출용)

**1. 교육기관 내역**

기관명칭		대표자	
소재지		전화	
지정일자		FAX	

**2.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**

업종별 교육대상자	교육계획 인원(명)	교육수료인원(명)		
		온라인	집합	계
총 인원				
신규 교육				
보수 교육				

**3. 회차별 안전위생교육 결과(온라인 교육 제외)**

구분	교육일시	교육장소	수료인원(명)	비 고
계				

**4. 교육수료자 명단 : 별도첨부**

**5. 기타사항**



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 
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-----  
----- 보고(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